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행편의성 제고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기준 완화〉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30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4. 12. 12.
3. 회 부 일 : 2024. 1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경찰청장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 부터 도로의 성격에 따라 100미터 또는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횡단보도 설치기준으로 인하여 오히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려고 할 때 횡단보도에 접근하여야 하는 거리가 멀어져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도로를 무단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폐지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쉽게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의 구조상 어려움이나

교통안전 확보 필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보행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도경찰청장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안전 확보 필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도경찰청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u>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u>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 ----- ----- <u>필요한 경우</u> ----- ----- ----- <u>. 다만, 도로의 구조상 어려움이나 교통안전 확보 필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며,¹⁾ 일반적으로 도로의 특성에 따라 100~2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되, 집산도로(근린지구 내부 구획 도로) 및 국지도로(주택·상업 지역의 생활도로)에서 횡단보도 최소 설치 간격을 100m로 제한하고 있음.

현행법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과 같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나, 일반적인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까지 최대 100m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은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어 무단횡단을 유발할 수 있음.

이와 관련 무단횡단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²⁾ 및 언론보도³⁾를 살펴보면, 횡단보도의 간격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시·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 중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 100미터

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가목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200미터

2) [연구결과]

- 임대룡 외 2인, 「무단횡단 사고 특성 분석 및 진단 :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제22권 제1호(2015년 3월), 85-97쪽.
- 최재성 외 4인, 「무단횡단 교통사고 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ITS학회 논문지 제14권 제3호 통권59호(2015. 6), 38-49쪽.
- 조준한, 「도로기능별 횡단보도 설치간격 및 운영 개선방안」,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5.
- 장일준,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32집(2016년 9월), 1-46쪽
- 조준한 외 1인, 「도로기능별 횡단보도 적정 설치간격 기준 연구」, 한국교통학회지 제41권 제6호(2023년 12월), 639쪽-656쪽

지적되고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이 2012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단횡단 경험자 552명 중 51.6%(285명)가 "횡단보도가 멀어서" 무단횡단을 했다고 응답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도경찰청장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도로 구조상의 제약이나 교통안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예외적 사유에 한해서만 설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횡단보도 설치 확대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개정안과 같이 횡단보도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을 두는 경우, 무분별한 횡단보도 설치로 인한 차량흐름을 방해하여 교통 혼잡을 가중하고 이는 오히려 보행자 안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현재도 보호구역이나 보행자 안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 간격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개정 실익이 크지 않고, 현행 기준이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임.

3) [언론보도]

- '횡단보도 설치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규칙 없애야[왜냐면]'(한겨레, 2024.11.06.),
- '횡단보도가 멀어서...목숨을 건 위험한 길주 무단횡단 이유'(파이낸셜뉴스, 2018.05.20.)

문 의 처
02)6788-5344